



의약품안전나라 사용 안내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제조업/맞춤형화장품 민원도
사용방법은 동일합니다.

목차

01	메뉴 접근	
	회원가입 접근	01
	전자민원신청 메뉴 접근	02
0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본 안내사항	03
	구비서류	0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05

1. 메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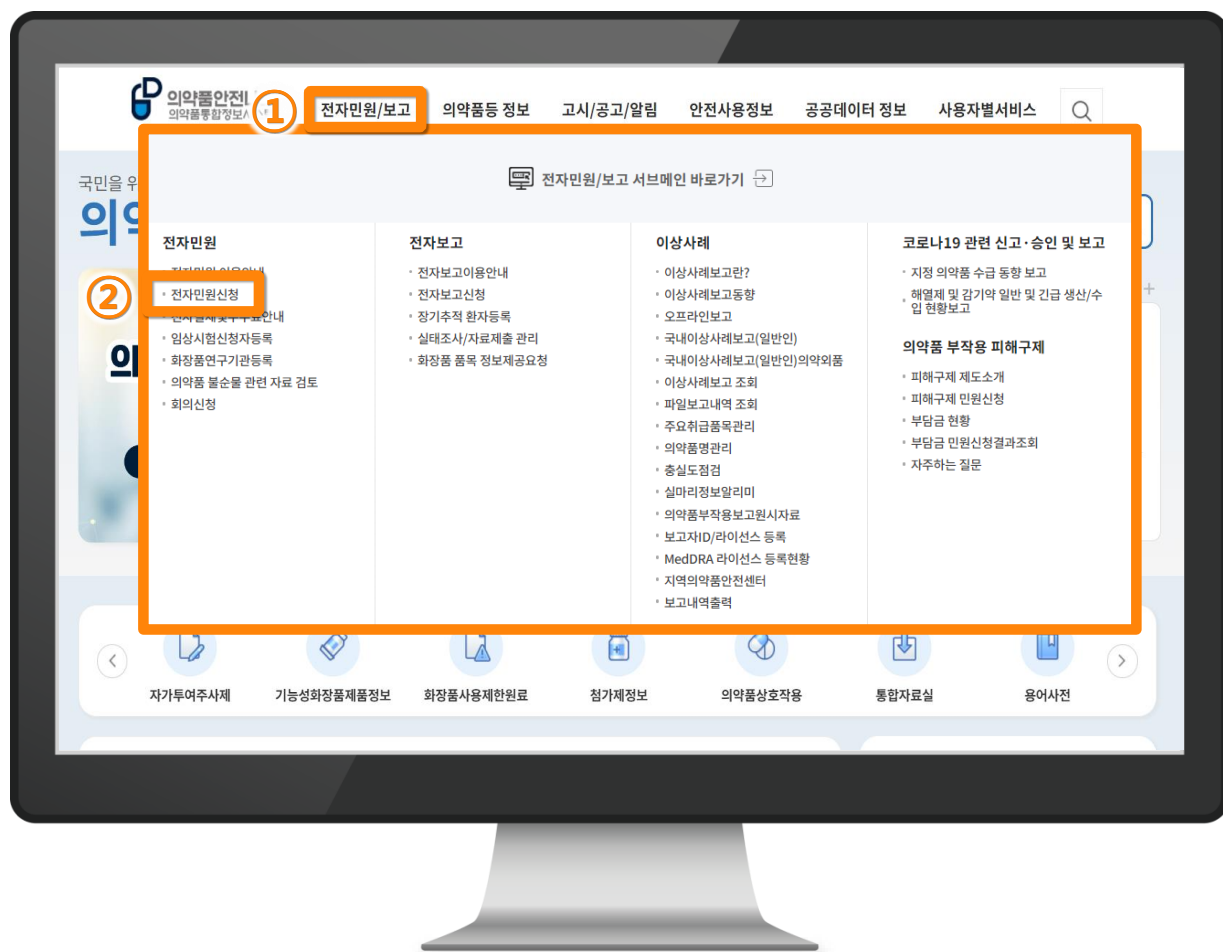
가. 회원가입 접근



- ①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리집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 ②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은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회원가입 및 권한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메뉴 접근

나. 전자민원신청 메뉴 접근



① 로그인 후 의약품안전나라 상단의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합니다.

② 전자민원 하위 메뉴인 “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하여 민원 신청 메뉴에 접근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가. 기본 안내사항

-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제조업 등록 필수)
나.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 ③ 비용은 27,000원(방문·우편은 30,000원, 면허세 별도), 처리기간은 최대 10일 이지만 담당자가 보완요청을 한 경우(최대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납부는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수수료 납부 및 환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은 민원수리 후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민원신청 시 선택한 수령방법으로 발급됩니다.
* 면허세 납부는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면허세 납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신청 후 진행현황 및 등록증 발급 관련 사항 등은 식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개인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⑥ 기존 업체와 동일 상호로 등록 불가하므로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에서 동일 상호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나. 구비서류

※ 아래는 관련 법령 상 명시된 기본서류로서 정확한 구비서류는 식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민원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② 대표자에 관한 사항(신청서 상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없을 경우 생년월일)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③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 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 ⑤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⑥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서 등
- ⑦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대표 포함) 기업은 대표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명서류(③ 동일) 및 아래 서류 중 택하여 제출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나. 상시 근로자가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다. 상시 근로자가 없으며 대표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 이하임을 확인하는 자사 공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입대행형거래를 목적으로化妆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①, ④, (해당 시) ⑦번 서류만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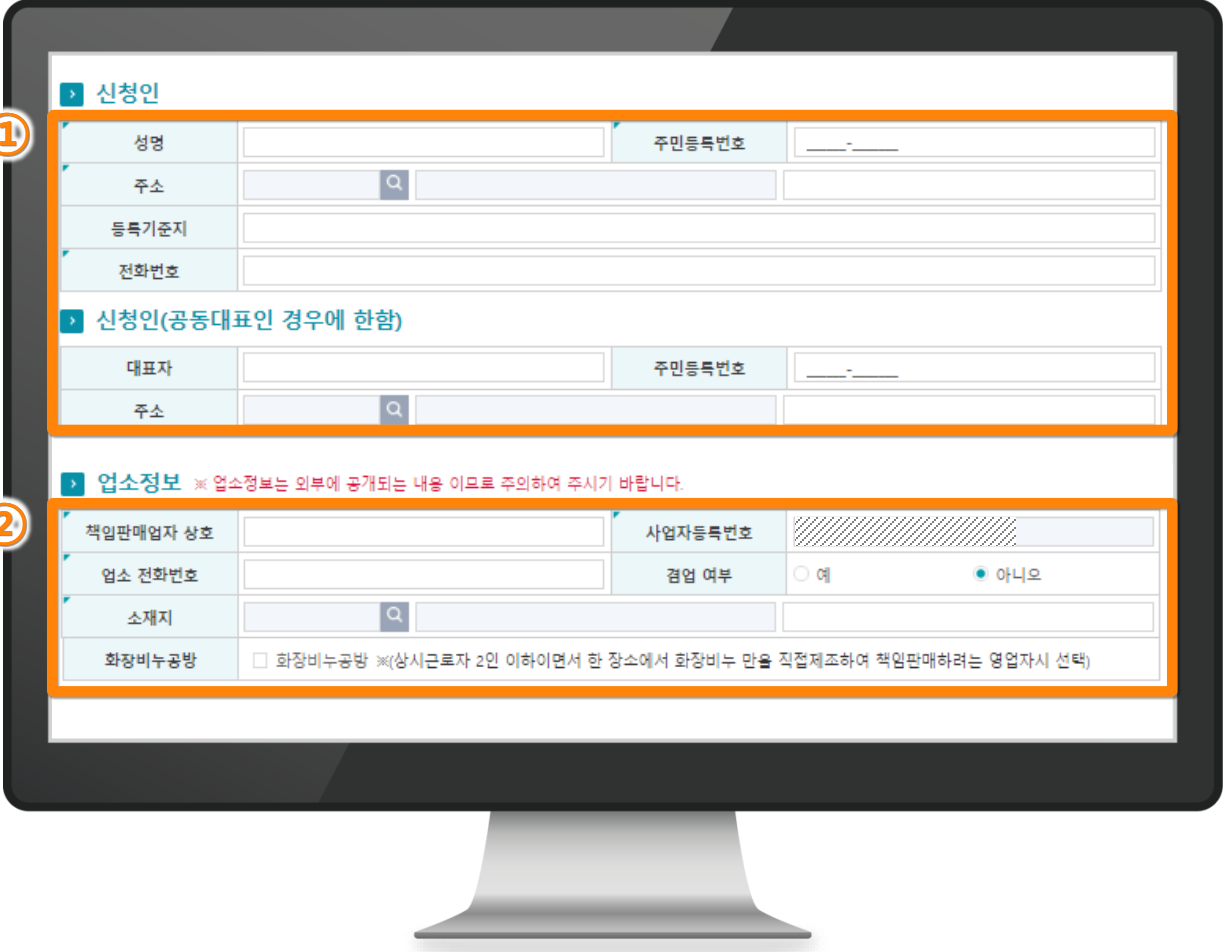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illegible]

- ① 민원사무검색 창에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검색합니다.
- ② 검색 후 민원사무목록에서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 ③ 수수료 27,000원과 처리일수 10일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1 신청인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등록기준지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신청인(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업소정보 ※ 업소정보는 외부에 공개되는 내용 이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판매업자 상호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업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겸업 여부	☐ 예 ☒ 아니요
소재지	<input type="text"/>		
화장비누공방	☐ 화장비누공방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이면서 한 장소에서 화장비누만을 직접제조하여 책임판매하려는 영업자시 선택)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주소 입력 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주소 검색 후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 ② 업소정보 입력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에는 로그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회원계정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이 번호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리자

1 2 3 4 5 6 7

상태 입력

관리자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기준

① 추가

② 검색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순번	선택코드번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1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합니다) 학과 또는 학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사람
3	3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환경공학·식품공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합니다)
5	5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6	6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7	수입대행령거래

선택 닫기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관리자 정보 입력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행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행을 더블 클릭하여 관리자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행의 우측 **검색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1 책임판매업의 유형

추가 삭제

책임판매업 구분

1 입력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2 민원정보

민원명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한	10
수수료	27,000	처리부서	-선택하세요-
수령방법	☐ 방문 ☐ 우편수령	접수번호	

3 담당자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민원진행 상황 알린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전자우편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책임판매업의 유형 입력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행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행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② 민원명을 확인하고 처리부서를 선택합니다.
 * 등록증 수령방법으로 **방문, 우편수령 중 선택**합니다.
- ③ 현재 민원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와 신청인(대표자)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for registering as a Cosmetic Responsible Sales Business. The form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민원정보' (Public Information) and '담당자' (Responsible Person).

민원정보 (Public Information):

민원명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한	10
수수료	27,000	처리부서	-선택하세요-
수령방법	☐ 방문 ☐ 우편수령	접수번호	

담당자 (Responsible Person):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민원신청 상황 알림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전자우편	

At the bottom right of the form, there are three buttons: ① 임시저장 (Save Draft), ② 구비서류 (Attachments), and 민원신청 (Apply).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미입력한 필수입력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 저장된 내용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임시저장 후 **구비서류 버튼**을 클릭해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거나 수정합니다.

* 구비서류 업로드는 임시저장 후 가능하며, 민원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업로드는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구비서류 업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민원정보

민원명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한	10
수수료	27,000	처리부서	-선택하세요-
수령방법	☐ 방문 ☐ 우편수령	접수번호	

담당자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민원신청 상황 알림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전자우편	

②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수료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① 민원신청

확인 취소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신청 후 수정 불가하므로 입력 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1차분류명에서 기타 선택 시 생성되는 팝업창의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 수수료 납부는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수수료 납부 및 환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 자료 오류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상담센터(1544-9563)



의약품안전나라 사용 안내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목차

01	메뉴 접근	
	회원가입 접근	01
	전자민원신청 메뉴 접근	02
0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기본 안내사항	03
	구비서류	04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05

1. 메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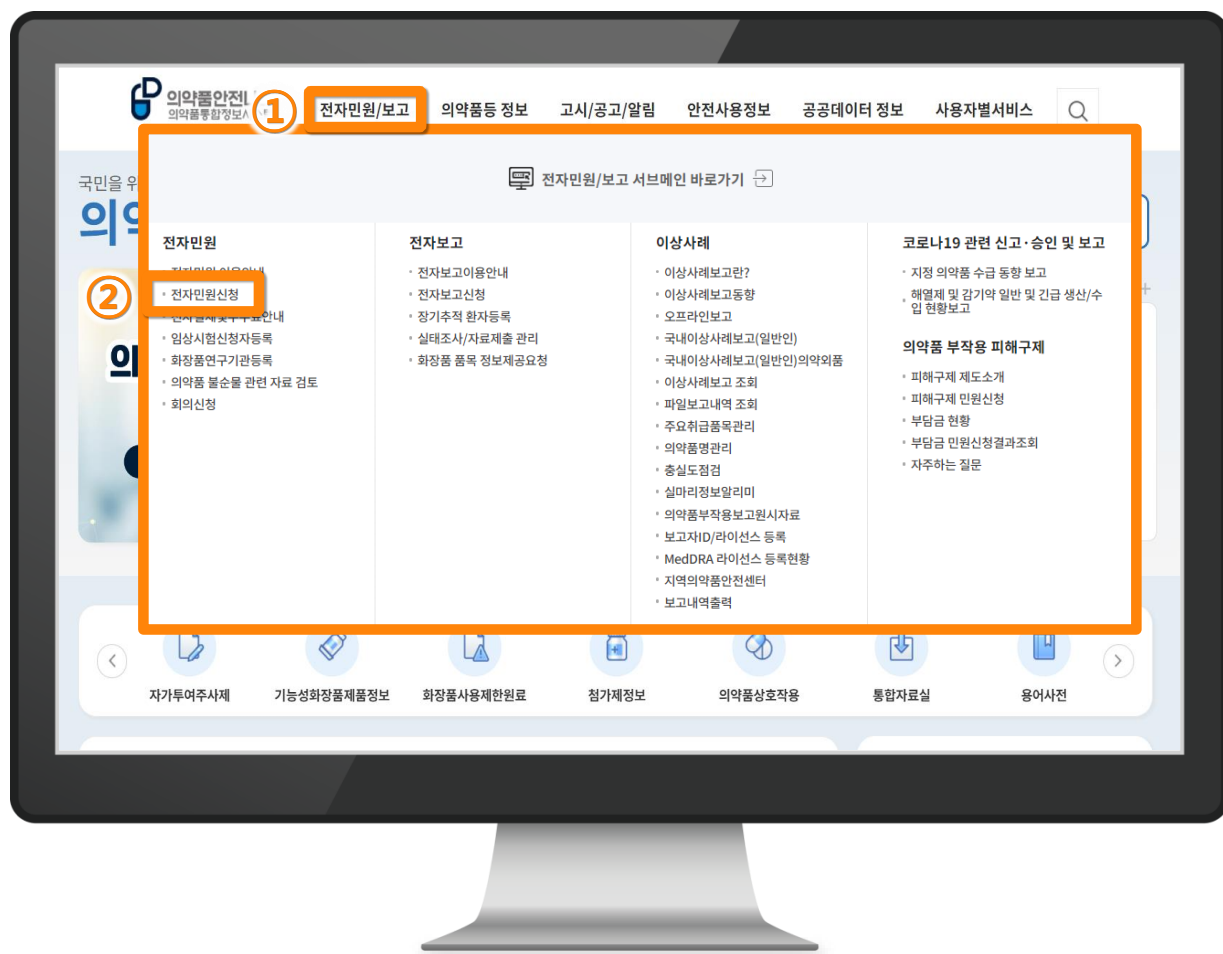
가. 회원가입 접근



- ①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리집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 ②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은 화면 상단의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회원가입 및 권한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메뉴 접근

나. 전자민원신청 메뉴 접근



① 로그인 후 의약품안전나라 상단의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합니다.

② 전자민원 하위 메뉴인 “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하여 민원 신청 메뉴에 접근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가. 기본 안내사항

-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 ②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대표자	개인책임판매업자 본인 또는 법인책임판매업자의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민원과 연동되지 않는 의약품안전나라 계정의 정보 변경 희망 시 회원정보(수정)-첨부파일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상담센터 연락
업체명	개인책임판매업자 상호 또는 법인책임판매업자의 명칭 변경 시 30일 이내	
소재지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30일 이내 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시 90일 이내	
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30일 이내	단독 변경 시 수수료 미부과
책임판매유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라목 중 유형 추가 또는 변경 시 30일 이내	

- ③ 비용은 9,000원(방문·우편은 10,000원)이며, 처리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담당자가 보완요청을 한 경우(최대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할 경우 수수료 0원,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 ④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증은 민원수리 후 민원신청 시 선택한 수령방법으로 발급됩니다.

* 민원신청 후 진행현황 및 등록증 발급 관련 사항 등은 식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 지위승계(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등록에 한하여 면허세가 발생하며, 이 경우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변경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나. 구비서류

※ 아래는 관련 법령 상 명시된 기본서류로서 정확한 구비서류는 식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공통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전자민원 신청 시 불요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전자민원 신청 시 사본 제출 후 우편으로 원본 제출 필요
추가 서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서 공증서,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추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책임판매유형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 담당자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유형 추가 또는 변경 시 한정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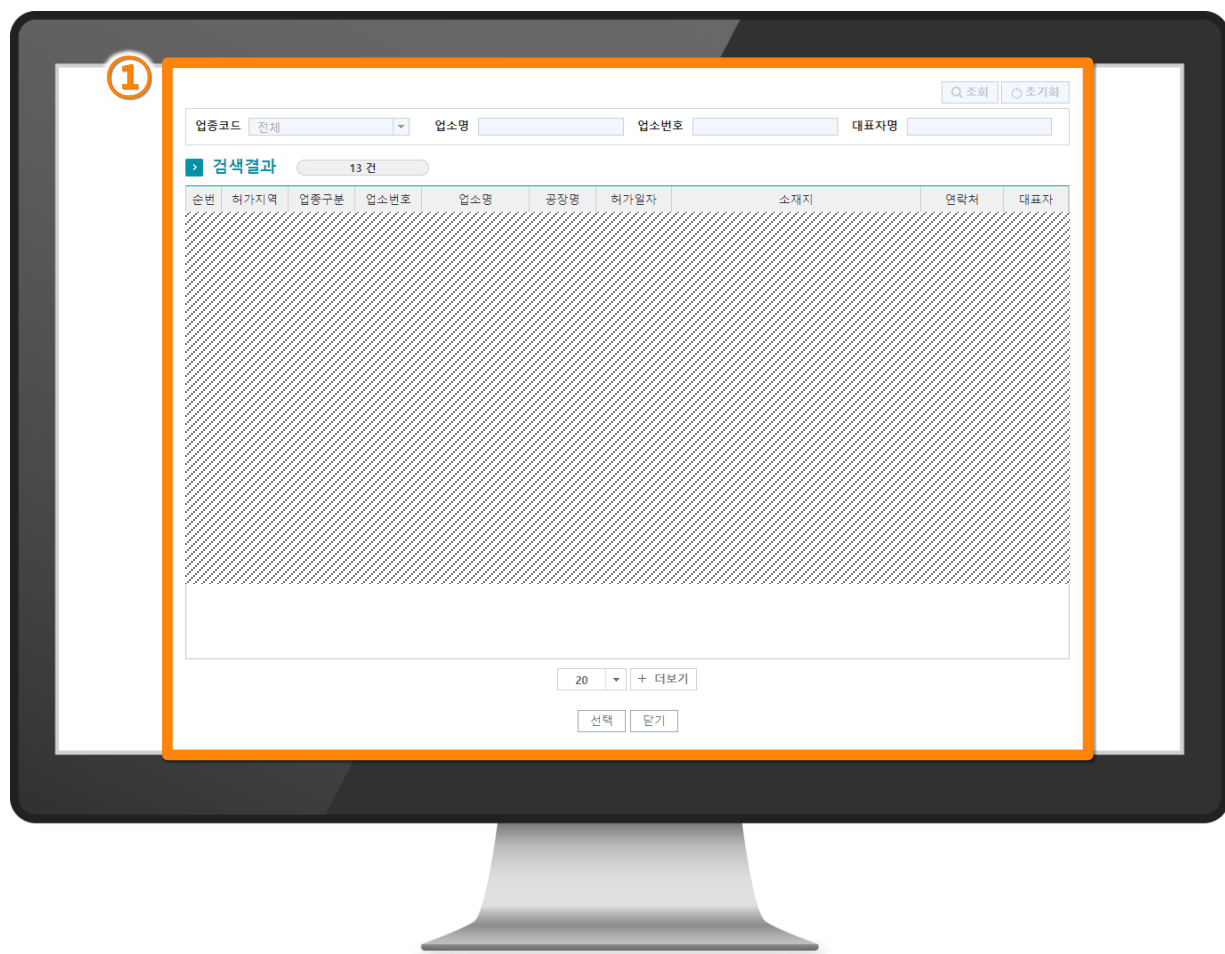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 ① 민원사무검색 창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검색합니다.
- ② 검색 후 민원사무목록에서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 ③ 민원사무명 확인 및 1차분류명을 선택하고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해 민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1차분류명을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으로, 기타 사항과 함께 책임판매관리자 또한 변경하는 경우 1차분류명을 기타로 선택합니다.
 - * 본 매뉴얼은 보다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는 기타 선택을 전제로 제작되었습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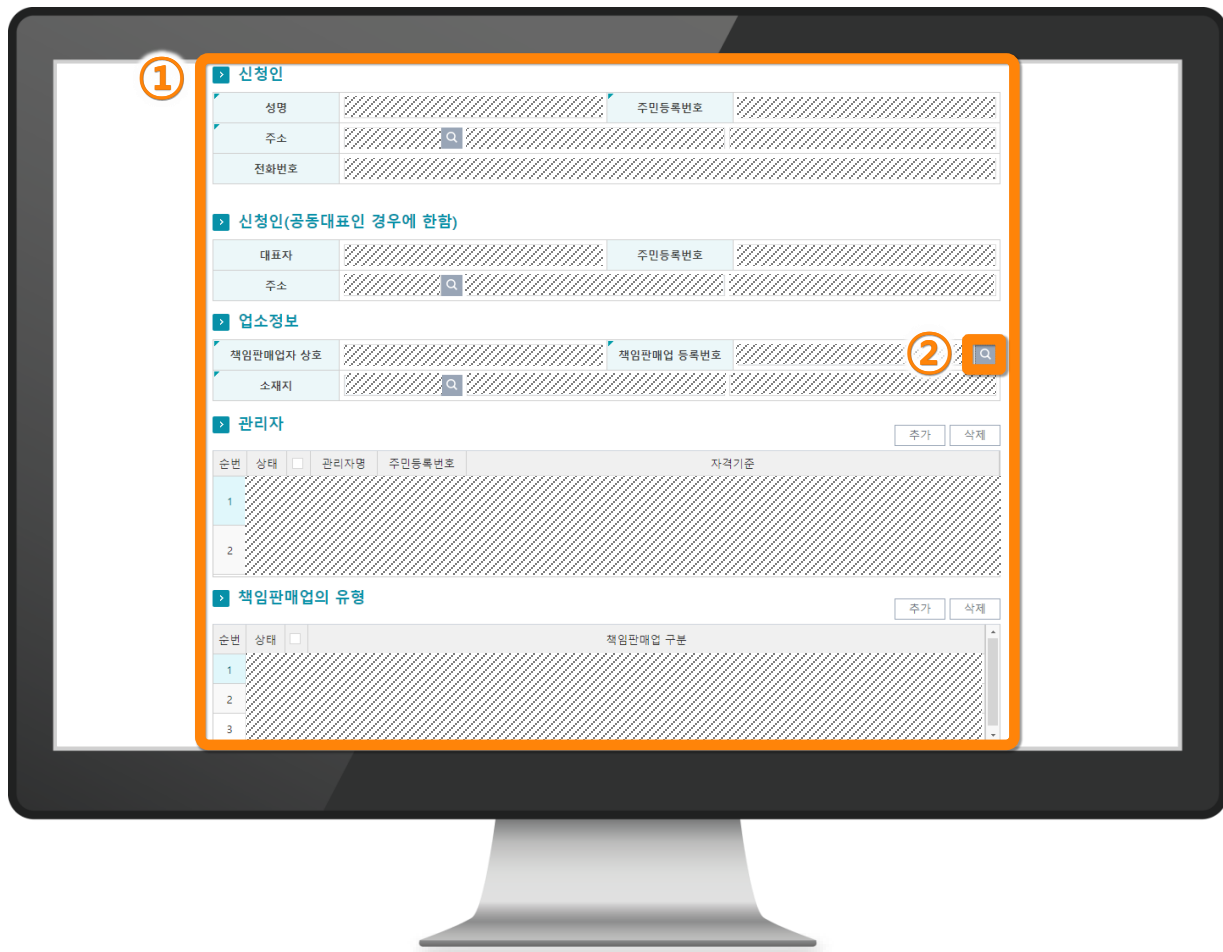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업소검색 창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를 선택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정보

책임판매업자 상호, 책임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관리자

순번, 상태, 관리자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기준

책임판매업의 유형

순번, 상태, 책임판매업 구분

2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책임판매업체 선택 시 이전에 등록했던 신청인, 책임판매업소정보, 관리자, 책임판매업의 유형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이 중 변경 등록을 희망하는 정보는 수정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판매업 등록번호의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업소검색 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변경대비표

① **추가** 삭제

순번	상태	항목	승인받은 사항	변경승인 신청사항	사유
1	입력				

②

변경사항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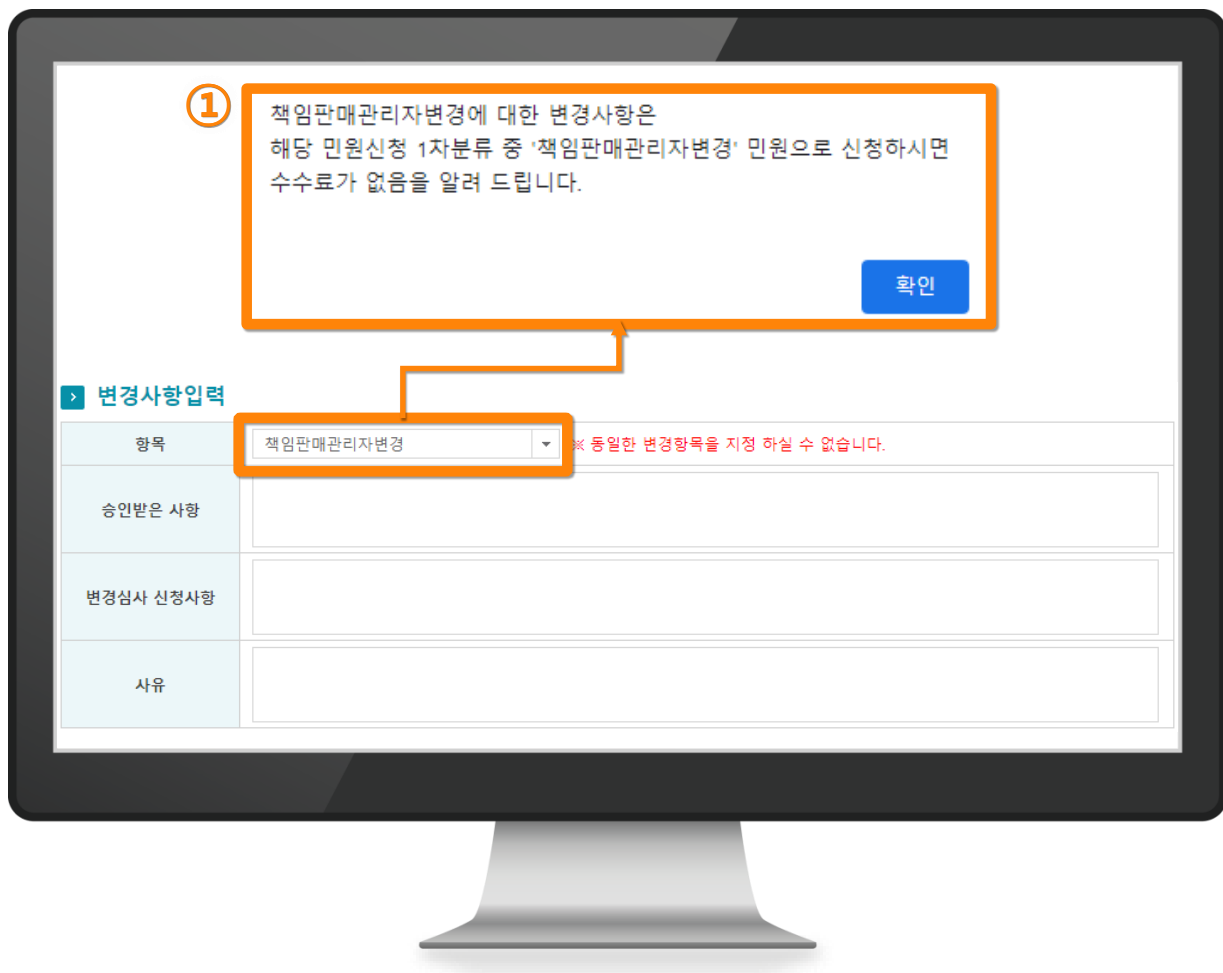
항목	<div> <div>선택하세요-</div> <div> <div>선택하세요-</div> <div>대표자변경</div> <div>상호변경</div> <div>소재지변경</div> </div> </div>	※ 동일한 변경항목을 지정 하실 수 없습니다.
승인받은 사항		
변경심사 신청사항	<div>책임판매관리자변경</div> <div>책임판매업의구분</div>	
사유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변경대비표 입력을 위해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행을 생성합니다.
 - ② 행이 생성되면 활성화되는 변경사항입력란의 항목을 선택한 후 등록 시 승인받은 사항 및 변경 등록이 필요한 변경심사 신청사항, 사유를 입력합니다.
- * 기존 업체와 동일 상호로 변경 등록 불가하므로 상호 변경 희망 시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에서 동일 상호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① 책임판매관리자변경에 대한 변경사항은 해당 민원신청 1차분류 중 '책임판매관리자변경'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수수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확인

> 변경사항입력

항목	책임판매관리자변경	※ 동일한 변경항목을 지정 하실 수 없습니다.
승인받은 사항		
변경심사 신청사항		
사유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대표자, 상호, 소재지, 업구분 등 다른 항목의 변경 없이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1차분류명을 **책임판매관리자변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정보

책임판매업자 상호		책임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관리자

순번	상태	관리자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기준
1				
2				

책임판매업의 유형

순번	상태	책임판매업 구분
1		
2		
3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변경대비표에 작성한 변경 사항을 위의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에도 반영하여 직접 수정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1. 민원정보

민원명	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책임판매관리자변:	처리기한	7
수수료	0	처리부서	-선택하세요-
수령방법	☐ 방문 ☐ 우편수령	접수번호	

2. 담당자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민원진행 상황 알람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전자우편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① 민원명을 확인하고 처리부서를 선택합니다.

* 등록증 수령방법으로 방문, 우편수령 중 선택합니다.

② 현재 민원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담당자와 신청인(대표자)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민원정보

민원명	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책임판매관리자변:	처리기한	7
수수료	0	처리부서	-선택하세요-
수령방법	☐ 방문 ☐ 우편수령	접수번호	

담당자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민원진행 상황 알림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전자우편	

① 임시저장 ② 구비서류 민원신청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①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미입력한 필수입력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 저장된 내용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임시저장 후 구비서류 버튼을 클릭해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거나 수정합니다.

* 구비서류 업로드는 임시저장 후 가능하며, 민원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업로드는 화면 상단의 고객센터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구비서류 업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민원정보

민원명	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책임판매관리자변:	처리기한	7
수수료	0	처리부서	-선택하세요-
수령방법	☐ 방문 ☐ 우편수령	접수번호	

담당자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민원진행 상황 알림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전자우편	

②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수료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① 임시저장 구비서류 **민원신청**

*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① 신청 후 수정 불가하므로 입력 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1차분류명에서 기타 선택 시 생성되는 팝업창의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 수수료 납부는 **화면 상단의 고객센터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의약품안전나라 시작하기-수수료 납부 및 환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상담센터(1544-9563)